

'91년도 전기공급규정 개정내용(중)

1991년 10월 1일 시행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2조 [공급]</p> <p>① [생략]</p> <p>1~2. [생략]</p> <p>3. 일반용전기공작물 수용가로서 제55조 [전기공작물 조사]에 의한 조사결과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p> <p>4. 자가용전기공작물 수용가로서 사용전 검사 또는 보안담당자의 선임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생략]</p> <p>제24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p> <p>① 당사가 전기를 공급하는 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은 1수용장소의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다음표에 의합니다.</p>	<p>제22조 [공급]</p> <p>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일반용전기설비 수용가로서 제55조 [전기설비 점검]에 _____ 점검결과가 _____ 아니한 경우</p> <p>4. 자가용전기설비 _____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_____ 아니한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 [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p> <p>① [현행과 같음]</p>	<p>○ 개정 전기사업법과 용어 일치 [보안담당자 → 전기안전관리담당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th> </tr> </thead> <tbody> <tr> <td>계약전력 100KW 미만</td> <td>교류 단상 또는 삼상 100V · 200V · 220V · 38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합니다.</td> </tr> <tr> <td>계약전력 100KV 이상</td> <td>교류 단상 또는 삼상 3,300V · 5,700V · 6,600V · 11,400V · 22,000V · 22,900V · 66,000V · 154,00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합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계약전력 100KW 미만	교류 단상 또는 삼상 100V · 200V · 220V · 38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합니다.	계약전력 100KV 이상	교류 단상 또는 삼상 3,300V · 5,700V · 6,600V · 11,400V · 22,000V · 22,900V · 66,000V · 154,00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th> </tr> </thead> <tbody> <tr> <td>계약전력 100KW 미만</td> <td>교류 단상 또는 삼상 110V · 200V · 220V · 380V 중 _____ 합니다. 다만,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압 및 특별고압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계약전력 100KW 이상</td> <td>교류 단상 또는 삼상 3,300V · 5,700V · 6,600V · 11,400V · 22,000V · 22,900V · 66,000V · 154,000V · 345,000V 중 _____ 합니다. 다만, 345,000V는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계약전력 100KW 미만	교류 단상 또는 삼상 110V · 200V · 220V · 380V 중 _____ 합니다. 다만,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압 및 특별고압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교류 단상 또는 삼상 3,300V · 5,700V · 6,600V · 11,400V · 22,000V · 22,900V · 66,000V · 154,000V · 345,000V 중 _____ 합니다. 다만, 345,000V는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p>○ 개정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일치</p> <p>○ 345,000V 신설</p>
구분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계약전력 100KW 미만	교류 단상 또는 삼상 100V · 200V · 220V · 38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합니다.													
계약전력 100KV 이상	교류 단상 또는 삼상 3,300V · 5,700V · 6,600V · 11,400V · 22,000V · 22,900V · 66,000V · 154,000V 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결정한 한가지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으로 합니다.													
구분	전기공급방식 및 공급전압													
계약전력 100KW 미만	교류 단상 또는 삼상 110V · 200V · 220V · 380V 중 _____ 합니다. 다만,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압 및 특별고압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100KW 이상	교류 단상 또는 삼상 3,300V · 5,700V · 6,600V · 11,400V · 22,000V · 22,900V · 66,000V · 154,000V · 345,000V 중 _____ 합니다. 다만, 345,000V는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p>다만, 계약전력 100KW미만의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압 및 특별고압중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1전압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p> <p>②~⑤ [생략]</p>	<p>[단서 표안에 명시]</p> <p>②~⑤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5조 [공급설비의 설치장소 제공]</p> <p>① 당사가 지중으로 공급하는 대규모 건축물 수용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장소내에 당사의 공급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맨홀 등의 구조물을 시설하여야 합니다.</p> <p>②~③ [생략]</p> <p>제26조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p> <p>① 2이상의 수용가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 [이하 “공용”이라 합니다]하고 수용가별로 계량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수용가가 자가발전설비에 의하여 상시로 전력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 각 수용가의 수용장소가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또한 변압기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p> <p>2. 설비의 공용범위, 전기사업법에서의 책임 및 공용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의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각 수용가간에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p> <p>② 당사와 변압기설비 공용수용가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수급지점으로 하며, 대표수용가가 전기안전 책임을 부담합니다.</p> <p>이 경우에 각 수용가 상호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수용가간의 협의에 따릅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25조 [공급설비의 설치장소 제공]</p> <p>① 당사가 지중으로 공급하는 수용가는 _____ 합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6조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p> <p>2이상의 수용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변압기 설비를 공용하는 것이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당사가 인정할 수 있으면 제17조 [수용장소의 구분]에 불구하고 수용장소를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수용가가 자가발전설비에 의하여 상시로 전력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 각 부분을 1수용장소로 하는 경우</p> <p> 각 수용가의 수용장소가 서로 연결 [連接] 또는 인접 [隣接]하여 그 사이에 제3자가 수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어야 하며 설비의 공용범위, 전기사업법에서의 책임 및 공용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의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각 수용가간에 명확히 정하고, 공동수용가의 전기안전 책임 한계점은 대표수용가의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기안전 책임은 대표수용가에게 있습니다.</p> <p> 이 경우에 각 수용가 상호간의 전기안전 책임한계점은 수용가간의 협의에 따릅니다.</p> <p>2. 전부를 1수용장소로 하는 경우</p> <p> 가. 상업업무지구 [地區]</p> <p> 서로 연결 [連接]한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하 “소유자등”이라고 합니다]가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건물의 소유자 등이 수전설비의 설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p>	<p>○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건축물” 별도명시 불요</p> <p>문맥정비</p> <p>개정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공동수전 설비”규정화</p>

규정소개

현행	개정	개정사유
<p>제29조 [공급설비의 시설]</p> <p>① 당사가 시설하는 전선로는 가공전선로로 합니다.</p> <p>다만,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로로 시설합니다.</p> <p>1. 법령에 의하여 지중배전지역으로 고시된 경우</p> <p>2. 당사의 전선로 지중화계획에 의하여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공고된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수용가가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당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② [생략]</p> <p>제38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p> <p>① 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와 동부속장치 [전력량계·최대수요전력계·최대수요전력표시부 전력량계·무효전력량계·계기용 변성기·타임스위치 등]는 당사가 시설 소유합니다.</p> <p>다만, 최대수요전력계의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전기계기 및 동부속장치를 수용가가 시설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p>	<p>나. 공업지구 [地區]</p> <p>공장이 서로 연결 [連接]하여 있거나 또는 인접 [隣接]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수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전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 수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소유자 등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제29조 [공급설비의 시설]</p> <p>① 당사가 _____ 합니다.</p> <p>다만, _____</p> <p>시설합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공동구 [地下共同溝]에 전선로가 시설 [施設]되어있는 지역의 인접지역</p> <p>4. 공업단지·주택단지 및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에서 지중전선로 시설을 요청하여 당사가 지중으로 공급한 지역</p> <p>5. 기술적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6. 수용가가 지중전선로를 희망하고 당사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p> <p>① 요금의 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와 동부속장치 [계기용 변성기·타임스위치 등]는 당사가 시설 소유합니다.</p> <p>다만, 최대수요전력계의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되는 전기계기 [이를 “시간대구분계기”라 합니다]를 설치하는 수용가는 전기계기 및 동부속장치를 수용가가 시설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가 필요하다</p>	<p>○ 지중공급대상 범위 명확히 명시</p> <p>- 당사의 배전선로 공동구 참여지역</p> <p>- 신도시개발 등 사업주체 부담으로 지중전선로 구성후 동선로에서 공급되는 지역</p> <p>○ 현행 4호와 같음 [조문 배열]</p> <p>○ 현행 3호와 같음 [조문 배열]</p> <p>○ 문맥정비</p> <p>- 전기계기에 대한 []내 명시부분 삭제로 오해 소지 배제</p> <p>- 시간대구분계기도 수용가가 시설 소유하는 근거 명시</p>

현행	개정	개정사유
<p>당사부담으로 시설 소유할 수 있습니다.</p> <p>② 제1항에 의하여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를 당사의 부담으로 시설 소유하는 수용으로서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용가가 우선 시설하고 그 소요대금은 당사에서 조사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수용가의 최초 월 요금 중에서 일시에 상환합니다.</p> <p>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2. 기타 수용가가 희망하는 경우</p> <p>③~⑤ [생략]</p> <p>제39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p> <p>① 산업용전력 [을] 수용가에 대하여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되는 전기계기 [이를 "시간대구분계기"라 합니다]를 설치합니다.</p> <p>②~③ [생략]</p> <p>제41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p> <p>수용가의 전기사용이 전기기기의 특성으로 인한 다음 중의 하나의 원인으로 다른 수용가의 전기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당사의 전기공작물에 지장을 미치거나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당사가 인정하는 조정장치 또는 보호장치를 수용장소에 시설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공급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전용공급설비를 시설하여야 합니다.</p> <p>1~5. [생략]</p> <p>제42조 [수용장소의 출입]</p> <p>[본문 생략]</p> <p>1. [생략]</p> <p>2. 제60조 [전기안전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 및 제61조 [수용가 소유의 전기공작물에 대한 공사]에 의할 때</p> <p>3. 이 규정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가의 전기공작물을 검사하거나 또는 전기기기를 시험할 때</p> <p>4~6. [생략]</p>	<p>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부담으로 시설 소유할 수 있습니다.</p> <p>② 제1항에 _____ _____ 그 소요대금은 당사에서 조사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현금으로 일시에 상환합니다.</p> <p>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③~⑤ [현행과 같음]</p> <p>제39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p> <p>① 산업용전력 [을] 수용가에 대하여는 시간대구분계기를 설치합니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1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p> <p>수용가의 _____ _____ 전기설비 _____ _____ 합니다.</p> <p>1~5. [현행과 같음]</p> <p>제42조 [수용장소의 출입]</p> <p>[본문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 2. 제60조 [전기안전을 위한 수용가의 협력] 및 제61조 [수용가 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에 의할 때</p> <p>3. 이 규정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가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또는 전기기기를 시험할 때</p> <p>4~6. [현행과 같음]</p>	<p>○ 공정거래와 업무편익도모 요금상환 → 현금상환</p> <p>○ 문맥정비</p> <p><다음호에 계속...></p>